

# 「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」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

■ 상품특징 : 생활 속 친환경 금융거래를 통한 우대혜택 및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정기예금

#### 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작성기준일 : 2024. 4. 24.)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개인(1인 1계좌)
상품유형	정기예금(큰만족실세예금)
거래방법	■ 신규 : 영업점, 비대면 채널 ■ 해지 : 영업점, 비대면 채널 (자동 만기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)
가입금액	1백만원 이상
계약기간	1년 이상 ~ 3년 이하(월단위) ※ 계약기간 변경 불가
이자지급시기	만기일시지급식 계약기간 동안 약정이자율로 계산하여 만기에 일시지급 월이자지급식 계약기간 동안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총이자를 월수로 나눠 매월지급
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	■ 계좌에 <b>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</b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



기본이	이자 <del>율</del>
(연%,	세전)

큰만족실세예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

- ※ 농협인터넷뱅킹>금융상품몰>농협은행>예금금리안내>거치식
- ☞ 작성기준일 현재 기본이자율이며 실제적용금리는 가입일의 고시이자율에 따름

이자지급방식	12개월 이상	24개월 이상	36개월
 만기일시지급식	3.10	3.15	3.40
월이자지급식	3.00	3.05	3.30

## ※ 최대 연 0.40%p

아래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기본이자율에 가산하여 우대이자율 적용 ① 친환경 서약 우대 0.10%p

내용	<b>우대이자율</b> (세전, 연 %p)
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서 제출 <sup>주1)</sup>	0.1

# ② 친환경 거래우대 최고 0.30%p

# 우대이자율 (연%, 세전)

구분	내용	<b>우대이자율</b> (세전, 연 %p)
제로페이퍼 1	통장 미발급 <sup>주2)</sup>	0.1
제로페이퍼 2	손하나로인증 서비스 등록 <sup>주3)</sup>	0.1
ESG 콜라보	적금과 예금 동시보유 <sup>주4)</sup>	0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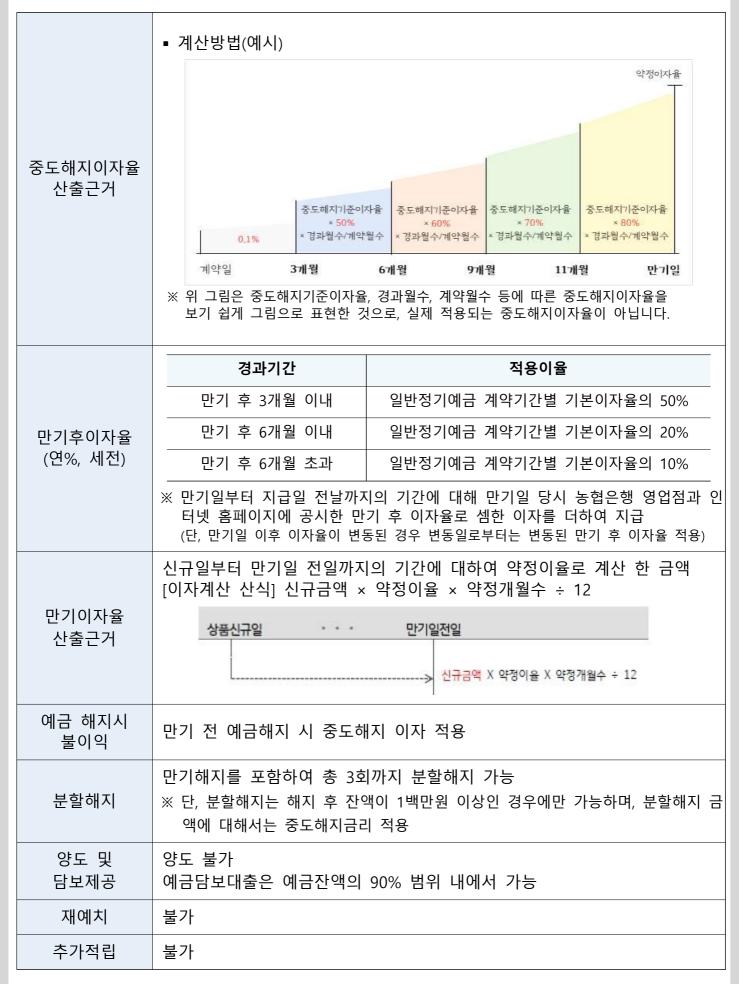
- 주1) 탄소포인트제 동참 등 친환경 활동 목록이 제시된 서약서에 동의
- 주2) 가입시점 통장 미발급 선택 시 우대금리적용 및 만기까지 통장 발급불가
- 주3) 만기전전월말 기준 손하나로인증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주4) 이 예금의 만기시점에「NH내가Green초록세상적금」의 유효계좌를 보유하거나 이 예금의 가입기간동안「NH내가Green초록세상적금」의 만기해지내역이 있는 경우

# 중도해지이자율 (연%, 세전)

경과기간	적용이자율/적용률
3개월 미만	0.10
6개월 미만	중도해지 기준이율 × 50% × 경과율
9개월 미만	중도해지 기준이율 × 60% × 경과율
11개월 미만	중도해지 기준이율 × 70% × 경과율
11개월 이상	중도해지 기준이율 × 80% × 경과율

- 중도해지이자율 : 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(소수 넷째자리에서 절사)
  - 중도해지 최저이자율는 0.1%
-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: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기본이자율
-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, 월 미만 일수는 버림
- 적용률 : 경과기간별 적용률
- 경과율 : 경과월수 ÷ 계약월수







계약해지방법	■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■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■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(단,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)
자료열람 요구권	<ul> <li>■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li>■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위법계약해지권	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■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휴면예금 및 출연	■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 ■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	■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b>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</b>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세제혜택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연계·제휴서비스	해당사항 없음
기금조성	신규가입 계좌당 2,000원씩 녹색환경기금 적립 (NH내가Green초록세상 예금·적금 합산 총 1억원 한도)



#### 3 유의 사항

- 상품내용 및 서비스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변경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-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'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'에 동의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통장 미발급으로 가입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통장발급은 불가합니다.

※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banking.nonghyup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 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상품개발부서: 개인고객부)



# 〈부록〉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<ul> <li>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</li> <li>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 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 </ul>
경과기간	■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